

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3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9일

3. 제안이유

가. 인력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 및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민이 서로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종전의 “생산적 일손봉사”를 “일손이음”으로 새롭게 변경하고,

나. 다소 모호하게 규정된 일부 조문을 구체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 변경(안 제명)

-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⇨ 충청북도 일손이음 지원 조례

나. “일손이음”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·정비(안 제2조)

다. 일손이음 지원사업 수행 시장·군수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및 방법·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(안 제6조)

라. 일손이음 참여자에 대한 실비 등 지원 규정 정비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생산적 일손 봉사는 일할 능력이 있는 지역의 유희인력이 농가와 기업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일정액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으로 일손을 제공하는 사업임
- 충북도는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산적 일손봉사를 장려하여 왔으며,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을 중심으로 릴레이 참여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음

나. 조례안의 주요 개정조항에 대한 의견

- 조례의 제명 변경(안 제명)과 관련하여 ” “생산적 일손봉사” 를 “일손이음” 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히 드러낸다는 제안설명은 논리적이지 않으나 우리말을 사용하는 취지라면 납득할 만하다고 사료됨
- 이 조례안 제6조 제1항에서 홍보물 제작·구입비, 일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,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신설하여 3개 각 호에서 6개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·군수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임

다. 종합의견

- 이 조례안은 “생산적 일손봉사” 를 “일손이음” 으로 바꾸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과연 이러한 명칭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, 행정 낭비는 아닌지 제고할 필요가 있음

- 또한 이 조례안 제6조 제1항에서 홍보물 제작·구입비, 일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,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신설하여 3개 각호에서 6개로 확대하였는데 이와 관련 예산확보의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